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2016. 8.

한 동 호
오 경 섭
이 상 신
이 경 화

KINU 통일연구원

목차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Ⅰ. 서론 01

Ⅱ. 국제인권규약과 북한의 고문 실태 04

1. 고문의 정의 04

2. 국제인권규약과 북한에 대한 입장 05

Ⅲ. 북한 내 고문의 유형과 피해사례 09

1. 신체적 고문기법 11

구타 11 | 고정자세 강요와 뽐뿌 16 | 95도 각 19 | 종아리 뒤 각목끼우고 꿇어 앉히기 20 | 전기고문 21 | 몸에 물 붓기 및 물몽둥이 구타 22 | 불고문 22 | 상자 감금 23 | 비둘기 고문 23 | 빛고문 24 | 물고문 25 | 거꾸로 매달기 26 | 손톱 밑 찌르기 26

2. 심리적 고문 기법 27

타인의 고문 및 처형 목격 강요 27 | 폭언 및 인격모독 28 | 그 외 비인도적 처우 30

3. 복합적 고문 기법 30

독방감금 30 | 불결한 환경에 노출 33 | 화장실 이용 제한 36 | 수면박탈 37 | 영양박탈 38 | 열악한 의료 환경 42 | 성적 굴욕감 44

Ⅳ. 결론 52

I
서 론

북한은 사회주의 공화국 혹은 인민들의 천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 내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중에서도 고문, 구타 및 가혹행위 현상은 사회 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이러한 현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인권침해 실태일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 내 뿌리 깊게 형성되어 온 감시와 처벌 그리고 폭력성의 문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는 탈북 이후 체포되었을 때 강제송환 과정, 일반 범죄자에 대한 처벌 과정 등을 막론하고 일반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범죄자의 경우, 적법절차에 의해 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재판 및 예심 과정, 구류 과정, 집결 과정 등 구금 및 교정시설의 전 과정에 걸쳐 고문, 구타 및 가혹행위가 도처에서 발견된다. 중국 등지로 탈북하는 과정이나 혹은 이후의 과정에서 체포되어 북송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 혹은 단순히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당국의 처벌과 고문, 가혹행위 등 각종 비인도적 처우를 경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분석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북한 내 고문, 구타 및 가혹행위 실태를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실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북한 내 만연해 있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국내외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의 형태를 여러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기초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의 실태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크게 구분하면, 신체적 고문 기법, 심리적 고문 기법, 복합적 고문 기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를 위해 다양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한 심층면접 자료가 주된 정보원천으로 사용되었다.[1] 사례 선정의 경우 비교적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의미 있는 증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일이 좀 지난 경우라도 주요 사례로 포함시켰다. 또한, 필요한 경우 최근 2016년의 사례도 몇 건 포함시켰다. 상기한 심층면접조사 이외에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다양한 보고서 및 자료를 참고하여 교차 검증하였다.

본 보고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국제인권규약과 북한의 고문 실태를, Ⅲ장에서는 북한 내 고문의 유형과 피해사례를 각각 신체적 고문 기법, 심리적 고문 기법, 복합적 고문 기법으로 나누어 살핀

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왔다. 본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2012년에서 2015년의 기간 동안 수행된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과 이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고 있다.

다. Ⅱ장에서 제시되는 고문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인도적 처우로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결론인 Ⅳ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객관적 정보 제공은 전반적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작지만 요긴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실태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더욱 실체화되고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Ⅱ

국제인권규약과 북한의 고문 실태

1. 고문의 정의

국제사회에서 고문의 정의는 1984년 12월 10일 제39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제1조 제1항을 따른다. 고문방지협약은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 동의 ·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고문방지협약에서 명시한 고문의 개념은 "공무원이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2] 그러므로 공무원이 가한 행위가 고문의 핵심적 요소인 '고의', '특정한 목적의 달

성', '극심한 고통'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행위는 고문이 아니라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우에 해당한다.[3]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우는 고문의 핵심 요소에서 하나가 결여되어 고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가혹한 고통의 부과를 의미한다.[4] 또 고문방지협약은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 · 행정 · 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한다.

2. 국제인권규약과 북한에 대한 입장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국제적 범죄행위다. 유엔은 각종 국제인권규약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유엔은 국제연합헌장 제55조를 통해서 국가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이의 준수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각국 정부가 자행하는 고문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2) 임진원, "제7조 고문 등의 금지," 『공익과 인권』, 제3권 제2호 (2006), p.260.

3) M.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2nd edition (N.P.Engel, 2005), p.161, 임진원, "제7조 고문 등의 금지," p.260 재인용.

4) 위의 책, pp.262~263 재인용.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유엔은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만인의 보호에 관한 선언(고문금지선언)'을 했고, 1984년 12월 10일 제39차 유엔총회에서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했다.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6월 2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87년 6월 26일 발효되었다.

유엔이 고문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여전히 고문이 근절되지 않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2015년에 많은 정부들이 국내적 이유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기록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행한 『2015/2016 엠네스티 국제연례보고서(Amnesty International Annual Report 2015/2016)』에서는 122개국 이상의 국가들에서 고문이나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면서 자국민을 고문하거나 학대하는 대표적인 정권이다. 유엔은 북한당국이 자국민에 대한 고문이나 학대를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고문이나 학대 행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북한당국은 1999년 12월 25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제7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에서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처우 또는 형벌을 폐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기술했다. 구체적으로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인 처우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은 여러 조항을 통해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당국은 2009년 8월 27일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고문과 그 밖의 비인도적인 처우의 금지'에 대해서 기술했다. 국가보고서는 "형사소송법은 고문이나 구타와 같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백이나 고백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고문을 통해 강압적인 심문을 하거나 사건을 과장 또는 날조하는, 부당한 판결 또는 판정을 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은 북한에서 북한당국에 의해 고문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01년 8월 27일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에서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를 위반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내에서 가혹행위와 고문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교화소나 구금시설에서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와 환경이 존재하고, 의료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엔은 정례인권검토 결과를 통해 북한에서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인 처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위원회(2003년 이후)와 유엔총회(2005년 이후)는 매년 북한인권결의문에서 북한의 고문, 비인도적인 구금,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

을 촉구했다.

통일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발행한 북한인권백서는 북한당국의 지시와 방조에 의해 북한 내에서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북한인권백서는 북한당국이 수사 · 예심 · 기소와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기타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를 실행한다고 비판하면서 탈북자 증언을 통해 다수의 고문피해와 비인도적 처우 사례를 제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발행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이후 북한인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심문기간 동안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고문을 가하고 있고, 고문이 하나의 조사 방식으로 확립되었으며, 피의자들이 자백할 때까지 고문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관료들이 하급관료들에게 효과적인 고문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많은 피의자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예심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해 구류장에서 사망한다고 한다. 또 인민보안부에서는 예심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고, 조사를 받지 않을 때에는 감방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둔 자세로 하루 종일 생활해야 한다고 한다.

III

북한 내 고문의 유형과 피해사례

북한의 구류장, 집결소, 교화소 등 교정시설 및 보위부, 보안부 등의 기관에서 고문 및 각종 비인도적 처우는 매우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구타나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이들 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탈북자들의 광범위한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는 탈북관련 범죄자들에게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 범죄의 경우에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는 범죄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교정시설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가해지고 있다. 또한 고문 자체를 범죄자들에 대한 하나의 형벌로 사용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도강하거나 이후 중국에 머문 행위는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 주로 경제적인 이유나 한국행을 위해 중국에 머무르다가 변방대나 공안대에 발각되어 강제송환 되며, 자발적으로 귀환의사를 밝히기도 한다.[5] 이후 심문을 통해 탈북동기와 도강 시기 및

5) 자발적으로 귀환하거나 배의 표류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온 경우에도 강제송환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다. 신의주 출신의 한 증언자는 같은 지역 사람들이 새우잡이 도중 중국 앞바다에서 구조되어 중국 내 북한(조선) 대사관을 통해 귀환한 경우에도 강제송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위부에서 두 달 동안 조사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의하자 구타로 사망하는 것을 목격(같은 시설 수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07년 수감, NKHR2016-051 2016-04-19

횟수, 한국인 및 종교인과의 접촉, 한국행 여부를 조사하는데[6] 이 과정부터 구금 시설까지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행해진다.

북한 주민이 강제송환 될 경우 집결소와 구류장을 거쳐 출신지역의 수용시설로 보내진다. 신의주, 온성, 만포 등지의 국경지역에 있는 보위부 구류장에 일차적으로 구금되며 도 집결소를 거쳐 본인 주소지의 보안서 구류장으로 보내져 주변 지역의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 수감된다. 구류장은 범죄혐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곳이며, 집결소는 강제송환 탈북자를 포함하여 여행지역을 이탈한 사람들이나 사건 계류자 등을 조사하고 수감하는 곳이다.[7] 집결소는 강제 송환자들이 출신 지역의 조사기관이나 노동단련대 등으로 보내지기 전 대기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본인의 주소지로 통보되어 보내지기까지는 보통 2달~3달이 걸리는데 강제노동을 시키기 위해 일부러 통보시기를 늦추기도 한다. 만약 집결소에 사람이 넘쳐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단련대에 수감되기도 하는데, 송환자들을 따로 분리해서 수감한다.[8]

6)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352.
7) 한동호 외, 『북한교화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4.
8) 2015년 8월 수감, NKHR2015-156 2015-11-17

1. 신체적 고문기법

가. 구타

여러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행위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구타이다.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것 이외에도, 몽둥이[9]나 채찍[10] 등을 사용한다는 증언들이 있다.[11] 구타는 구류장, 집결소, 단련대, 교화소 등 모든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12]

특히 탈북 후 강제송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는 보안원 등에 의해 빈번히 발생했다. 중국 내 생활이나 한국행 기도 등의 도강 목적을 밝히는데 자백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문을 위한 구타가 가해진다. 구타는 탈북시기, 중국에서의 거주 기간, 한국행 기도를 조사하기 위해 취조를 받으면서 수시로 발생한다. 한 증언자는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변방대에 발각되어 무산의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시로 구타가 발생하였음을 증언하였다.[13]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 구류되었던 한 증언자는 보위부원이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상대한 적이 없는지 한국 영화를 보았는지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면 구타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14] 주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구타가 가해진다.

---

9) 2013년 수감, NKHR2014-041 2014-04-29; 2005년 8월~2007년 7월 수감, NKHR2014-056 2014-05-20

10) 2012년 목격, NKHR2015-073 2015-04-07

11) 2013년 3월 수감, NKHR2015-159 2015-12-01

12) 2011년 5월 수감, NKHR2015-036 2015-02-10

13) 2012년 7월 수감, NKHR2015-123 2015-09-08

14) 2011년 8월 수감, NKHR2015-031 2015-02-10

> 그때는 너의 죄를 인정하라고 쎄게 때리니까…문건 이런 거 다 작성해놓고 너는 그런 조국반역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보위부 관리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손도장을 넣어서 너는 그 죄를 인정하라… 아니라 하면 그냥 막 때리고…[15]

이처럼 취조 중 구타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후유증을 얻게 되었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다. 중국 장춘에서 공안에게 잡혀 강제송환된 증언자는 취조 중 진실을 자백하지 않는다고 구타를 당했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후유증이 남았다고 증언하였다.[16] 또 다른 증언자는 보위부 구류장에서 몽둥이로 맞아 한 달 동안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17] 다른 기간에 같은 온성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었던 또 다른 증언자는 총 4회 조사를 받았는데 첫 조사를 제외하고는 구둣발로 머리를 5~6차례씩 맞았다고 한다. 이 때 얼굴이 크게 부으면서 검게 변했으나 별다른 병원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보위부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시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20일을 더 두었다고 증언하였다.[18]

보안부나 보위부 요원 혹은, 교화소, 구류장의 관리 요원들이 직접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19] 남한 시민의 요청을 받고 북한 내 자녀를 찾아주다가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되었던 한

15) 2007년 수감, NKHR2016-051 2016-04-19
16) 2012년 2월 수감, NKHR2012-285 2012-12-18
17) 2012년 4월 수감, NKHR2014-024 2014-04-01
18) 2009년 12월 수감, NKHR2013-156 2013-08-20
19) 2009년 수감, NKHR2015-142 2015-10-06; 2013년 3월 수감, NKHR2015-159 2015-12-01; 2013년 8월~10월 수감, NKHR2014-121 2014-08-13

탈북자는, 이 조사과정에서 보위부 반탐과 지도원에게 '따귀, 발로 허벅다리 차기, 머리를 벽에 박기' 등의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20] 이러한 구타는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 또는 비인도적 처우와 같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같은 증언에 따르면 이 증언자는 독방에 구금되었을 뿐아니라 방 안에서 계속 고정자세를 강요당했다. 또한 매일 새벽 4시까지 취조당하면서 일주일 동안 잠 안 재우기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의 계호원 리○○은 새벽에 잠자고 있는 구금자들을 깨워 고정자세를 강요했으며, 조금이라도 구금자가 움직이면 구타를 가했다. 증언자 또한 계호원 리○○에게 3일 동안 머리채를 잡히고 벽에 머리를 박히는 구타를 당해 머리뼈가 보일 정도의 심한 부상을 당했다.[21]

보안서나 구금시설에서의 구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구타 사실이 발각되면 보안서 계호원 등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타를 검찰 등에 제소할 경우 극심한 보복이 뒤따르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차마 이를 제소하지 못하고 있다.

구타가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도 조사되었다.[22] 구체적으로,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수감되어 있던 한 여성이 보위부 예심원들의 구타로 사망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23]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함북 후창리 여행자 집결소에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 수감자가 심한 구타를 당하다가 사망했다. 그러나 이 수감자는 결국 병으로

20) 2009년 수감, NKHR2015-142 2015-10-06
21) 2007년 2월 25일 발생, NKHR2014-040 2014-04-29
22)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4-132 2014-08-26
23) 2014년 8월 발생, NKHR2015-027 2015-02-10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한다.[24] 또한, 중국에서 강제송환 된 남자의 경우 주소를 대지 않는다고 죽기 직전까지 사정없이 때리고 방치해 놓아서 욕창으로 사망한 사례[25]가 있으며 한국행 기도 중 중국에서 잡혀 송환 후 보위부 조사 도중 가혹행위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례[26]를 득문했다는 증언이 있다.

취조 불응 등의 이유가 아닌 기타의 사소한 이유로도 구타가 행해지고 있다.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한 증언자는 맹장염 증상으로 복통을 호소했으나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보위부원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27] 이 증언자는 결국 병원에 이송되어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마취도 없이 맹장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증언자는 단련대로 이송된 후에도 중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타당하기도 했다. 또 다른 증언자는, 회령시 전거리교화소 수감 중 구타를 당했는데,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병아리가 죽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28] 축산담당 지도원은 이 증언자를 무릎 꿇린 후 발로 얼굴을 찼다. 비슷한 사례로 노동단련대에서 하루 업무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29] 강냉이 절도죄로 만포시 노동단련대에서 1개월 실형을 살았던 증언자에 따르면, 노동단련대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발각되거나 구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도 구둣발로 차이거나 주먹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하루에 이러한 구타가 3회 이상 발생할 정도로

24) 2009년 발생, NKHR2014-102 2014-07-29
25) 2012년 7월 수감, NKHR2015-123 2015-09-08
26) 2012년 1월 목격, NKHR2013-042 2013-03-05
27) 2012년 10월 수감, NKHR2015-079 2015-04-21
28) 2009년 8월 발생, NKHR2015-103 2015-05-19
29) 2012년 목격, NKHR2015-073 2015-04-07

흔한 일이었다고 한다.[30] 심지어 한 증언자는 만포집결소에서 강제노동이 힘들어서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구타를 당했을 정도로,[31] 물리적 폭력은 북한 사회 시스템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

동료 수감자들에게 구타를 시키는 경우도 다수 있다. 황해북도 중화군 집결소를 경험한 한 탈북자는, 이 집결소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수감자가 잡히자, 동료 수감자 전원에게 이 사람을 구타하도록 강요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32]

한 증언자는 자신이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도록 강요당한 경험을 말하고 있다. 전거리교화소의 한 여성 수감자가 교화소 내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소편지를 비서에게 전달했는데, 결국 이 제소 내용이 담당 요원에게 알려지면서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동료수감자들이 지목되어 이 여성 수감자를 집단적으로 폭행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집단폭행에 가담하지 않는 수감자들 역시 폭행의 대상이 되었다.[33]

구타는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요원들이 직접 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증언에 따르면 구금시설의 반장 등이 이들 운영요원을 대신해서 구타하고 있다고 한다.[34] 구금시설 내에서 구타 그 자체는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35]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구금자들 자신에게 구타 행위를 떠넘기면서 구금자들 간의 사적 폭력의 문제로 덮어버리

30) 2010년 9월 수감, NKHR2015-094 2015-05-12

31) 2010년 수감, NKHR2014-031 2014-04-15

32) 2005년 12월 수감, NKHR2015-021 2015-01-27

33)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4-132 2014-08-26

34) 북한의 교화소 등에서는 감방의 생활 규율 및 통제를 위해 반장으로 수감생 중 한 명을 정한다. 같은 수감생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감시 및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방 생활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 다수가 원하는 자리라고 한다. 2001년 12월 수감, NKHR2014-000020 2014-03-18

35) 1999년~2000년 수감, NKHR2014-071 2014-06-17; 2002년 1월 수감, NKHR2014-072 2014-06-17

려고 하는 것이다.[36] 집결소에서 반장을 맡았던 한 증언자에 따르면, 도주자가 발생하면 반장들이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37] 또한 교화소 등에서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오면 고참 수감자들이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신참 수감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관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반장이나 수감자들 사이의 구타행위는 암묵적으로 묵인되거나 혹은 부추겨지고 있다.[38]

나. 고정자세 강요와 뽐뿌

고정자세는 조사 및 수감 중 발생하고 있는 유형화된 고문 형태이나, 특히 구류장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지는 가혹행위이다.[39] 구류장, 집결소, 단련대 세 곳의 구금시설을 모두 경험한 한 증언자에 따르면 특히 구류장의 가혹행위가 가장 심했다고 한다.[40] 집결소는 상대적으로 가혹행위는 덜했지만 강제노동의 강도가 가장 센 편이었다고 같은 증언자는 말하고 있다.

몇몇 증언에 따르면 북한정부가 교화소 등에서의 구타를 명시적으로 금지했고, 실제로 이 구금시설의 요원들은 자신이 직접 구타를 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말하고 있다.[41] 그러나 구타나 기타 직접적인 폭

36) 2012년 5월~6월 수감, NKHR2015-085 2015-04-21

37) 2002년 7월 수감, NKHR2014-135 2014-09-02

38) 2001년 12월 수감, NKHR2014-020 2014-03-18; 2003년 10월 발생, NKHR2014-021 2014-04-01; 2007년 11월~12월 수감, NKHR2014-051 2014-05-13

39) 2008년 9월 수감, NKHR2015-005 2015-01-13; 2012년 10월 수감, NKHR2015-079 2015-04-21

40) 2013년 3월 수감, NKHR2015-159 2015-12-01; 2014년 수감, NKHR2014-120 2014-08-12

41) 2013년 3월 수감, NKHR2015-159 2015-12-01

행이 아닌 고정자세 강요 등의 가혹행위는 일종의 관행으로 거의 모든 구금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로 취급을 받을 때에는 바닥에 꿇어 앉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한다. 수감 중에도 수면시간 및 식사시간 등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고정자세를 강요받는다. 조금도 움직임이 허용되지 않으며 고정된 자세로 앉아 한 곳을 응시하는 것이다. 각 방에는 교대로 계호원, 보안원 등이 배치되어 수감원들이 고정자세를 제대로 유지하는지 치밀하게 감시한다. 혹은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계호원 한 명이 안에서 감시하면 나머지 한 명은 밖에서 카메라로 감시하는 것이다.[42] 보안원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감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장에게 감시를 맡기기도 한다.

이처럼 수감자들은 하루 종일 비좁은 공간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는다.[43] 한 증언자는 고정자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강제노동을 하는 편이 차라리 더 쉬웠다고 한다.[44] 역시 구류장을 경험한 다른 탈북자에 의하면, 구류장은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저녁 10시에 취침하는 일과 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한다. 수감자들은 하루 종일 교정시간에 한 자세로 움직이지 말고 앉아 있어야 한다.[45] 움직이다 발각되면 가죽띠나 장작으로 구타당하며, 또는 식사금지, 수면박탈 등의 처벌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고정자세 중 사소한 움직임에도 신체적으로 더 가혹한

42) 2009년 수감, NHKR2015-142 2015-10-06
43) 2010년 2월 수감, NHKR2012-154 2012-07-31
44) 2009년 6월 수감, NHKR2013-098 2013-05-14
45) 2010년 수감, NKHR2014-065 2014-06-03

벌을 내린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다. 체벌로는 토끼뜀이나 95도 각, 뽐뿌 등이 조사되었으며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몸이 허약한 상태이므로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도중에 기절하거나 쓰러지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무산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으며 사소한 움직임이나 조는 것이 목격되면 토끼뜀을 100개 이상 강제하였으며 졸도해도 다시 토끼뜀을 시켰다고 증언하였다.[46] 또 다른 증언자는 자세의 어려움뿐 아니라 벽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 고정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었으며 고정자세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체벌로 뽐뿌를 강제해 도중에 기절하는 일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 아침 5시에 일어나면 벽을 마주보고 앉아야 하고 하루종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앉아만 있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때는 벌을 받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2,000개에서 5,000개를 시킵니다…벽을 마주하면 그 회가루 칠한 냄새에 막 올라오고 메스껍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속이 안좋다고 움직이면 뽐뿌 5,000개씩 시키니까…영양이 안 좋은 상태에서 뽐뿌 5,000개씩 시키니까 기절하는 게 대다수에요.[47]

2000년 6월경 무산군 보위부에 수감되었던 한 피해자는 푹푹 찌는 더위에 담요를 뒤집어쓰게 하고 뽐뿌 500개를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이미 이가 득실득실한 옷과 더러운 담요는 땀범벅이 되었다고 한다.[48]

탈북행위와 관련하여 체포된 여성들은 강제송환 후 국경 근처 보위

46) 2012년 7월 수감, NKHR2015-123 2015-09-08

47) 2007년 수감, NKHR2016-051 2016-04-19

48) 김○○(남), 2000년 1월~2000년 6월 수감, 신고접수일 2012-2-20,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 인권침해 사례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2), p.20

부에서 옷을 전부 탈의한 상태로 '뽐뿌'라는 행위를 수차례 하도록 강요받는다. 두 손을 머리위로 올리거나 뒷짐을 진 상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인데, 여성의 생식기나 항문에 숨긴 돈이 몸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49] 뽐뿌는 전형적인 조사방식으로 사용되지만, 구금 중에도 체벌의 한 유형으로 빈번히 행해진다. 뽐뿌는 고정자세 강요와 함께 구류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가혹행위이다. 2010년에 삼지연군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한 증언자에 따르면, 취침 중 누군가 코를 골거나 계호원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뒤척이면 그 해당 방의 모든 수감자들을 깨워서 뽐뿌 300~500개를 강요했다. 혹은 수감자들을 철창에 매달리게 하거나 기마자세를 오랫동안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한다.[50]

고정자세는 일반적으로 구금 중 앉아있는 자세를 지칭하지만, 밤새도록 움직이지 못하고 세워놓는 고정자세를 강제하기도 한다. 이는 수면을 불허하는 이중 고문이며 이로 인해 며칠간 다리를 쓰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다.[51]

다. 95도 각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고정자세 강요의 가혹행위를 당한 증언이 있다.[52] 증언자는 밀수 행위가 적발되어 체포되었고, 보위부에

49)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구금시설 현황과 개선방안: 교화소를 중심으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p.100

50) 2010년 2월~6월 수감, NKHR2014-085 2014-07-01

51) 2007년 구금, NKHR2016-051 2016-04-19

52) 2013년 7월 2일~7월 15일 수감, NKHR2015-136 2015-09-22; 2013년 6월~8월 수감, NKHR2015-153

인계되던 중 탈출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체포되어 구류장에 12일간 수감되었다가 시멘트 8톤을 뇌물로 주고 석방되었다고 한다. 이 구류장에서도 구금자들은 고정자세를 유지하고 앉아 있어야 했으며, 만약 이 고정자세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95도 각'이라는 가혹행위를 당했다.[53] 95도 각은 태권도의 기마자세 혹은 스쿼트(squat) 자세와 흡사하다.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직각에 가깝게 굽힌 채 오랫동안 유지하는 자세로, 상당한 고통이 따르며 관절과 근육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 증언자에 따르면, 이 가혹행위를 받는 구금자들은 "완전히 숙이고 조금 더 숙여야 한다"고 했다. 이 가혹행위는 매우 고통스러워서 "10분 서면 땀 흘리고 운다……그것을 30~40분씩 서게 한다."고 증언하였다. 어랑군 보안서 대기실의 가혹행위 목격자에 따르면,[54] 불명확한 이유로 65세의 남성이 고정자세 강요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철창에 무릎을 고정시키고 머리를 45도 각도로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벌을 받았다고 한다. 이 증언자 역시 같은 자세로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고정자세 강요 가혹행위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라. 종아리 뒤 각목끼우고 꿇어 앉히기

종아리 뒤에 각목을 끼우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고문행위가 있다.

2015-11-17; 2013년 3월 수감, NKHR2015-159 2015-12-01

53) 2013년 7월 2일~7월 15일 수감, NKHR2015-136 2015-09-22; 2005년 12월 수감, NKHR2014-082 2014-07-01

54) 2012년 9월 수감, NKHR2014-095 2014-07-15

다리에 큰 부담을 줌으로써 고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2006년 2월경 당시 학생(고등중학교 6학년)이었던 증언자는 홍콩 CD-R을 보았다는 이유로 함경북도 무산군 읍분주소 대기실에 구금되었는데 다른 영화를 더 보았는지, 빙두(마약)를 하지 않았는지 대라면서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한다. 손과 발을 족쇄로 채우고 구타하였으며 나무를 무릎 뒤에 끼운 상태로 무릎 꿇게 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당시의 후유증으로 인해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다.[55]

2000년도에 무산군 보위부에 구금되었던 또 다른 피해자는 6개월 동안 "굵은 나무 각자가 종아리 뒤쪽에 끼워진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 수없이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56] 또한 종성 관리소 동포지구 구류장에서도 무릎 사이에 (4각) 각자를 끼우고 24시간 꿇어앉아 고정자세를 강요하였다는 진술이 있다.[57]

마. 전기고문

북한에서는 여전히 전기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한 증언자는 2000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같은 마을 박○○이 살인혐의를 받아 보안서에 구금되었을 당시 전기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58] 2003년 11월,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55) 2006년 2월 발생, NKHR2012-030 2012-02-21

56) 김○○(남), 2000년 1월~2000년 6월 수감, 신고접수일 2012-02-20,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p.20

57) 안명철(남), 1987년 5월~1994년 9월 근무, 신고접수일 2012-02-04,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p.63.

58) 2000년 발생, NKHR2013-039 2013-03-05

은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서 전기충격기로 고문을 받고 기절하였으며, 이후 2개월간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고 증언하였다.[59] 전기고문이 직접적으로 자행되지는 않았지만 2010년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여성 수감자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여 성폭행을 한 경우도 있었다.[60]

바. 몸에 물 붓기 및 물몽둥이 구타

취조로 자백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고문으로 '몸에 찬물을 붓는 행위' 또는 한겨울에 물몽둥이로 구타하는 가혹한 신체적 고문이 행해진다. 2011년 4월 함경북도 무산군 보안서 대기실에서 사라진 이웃집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증언자를 조사했다고 한다. 당시 보안원인 김○○은 발과 주먹,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는 것은 물론 몸에 차가운 물을 들이붓는 고문을 가했다고 증언하였다.[61] 또한, 2012년 혜산시에서는 수감자를 겨울에 물몽둥이로 구타했다는 사례가 증언되었다.[62]

사. 불고문

1996년 개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피해자는 어머니와 형이 도주를 시도하였다가 잡혔다는 이유로 불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59) 북한이탈주민 면접, 2009년 2월.
60) 2010년 1월 발생, NKHR2012-105 2012-06-05
61) 2011년 5월 발생, NKHR2012-011 2012-01-31
62) 2012년 수감, NKHR2012-252 2012-11-20

옷을 전부 벗기고 천장에 쇠사슬로 매달아 숯불로 등과 허리를 태우는 가혹한 고문이었음을 증언하였다.[63]

아. 상자 감금

2009년 7월 평안북도의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취조를 받을 당시 가로 및 세로 60cm의 뚜껑달린 나무상자 안에 집어넣고 머리 위에 200w짜리 백열등을 켜놓아 하루 종일 가두었다고 한다. 나무상자의 뚜껑에 달려있는 백열등은 표면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 머리카락이 타고 피부가 벗겨지는 등 심한 화상을 입게 되며, 당시 고문을 행한 보위부원으로부터 이 고문을 4시간 이상 버틴 사람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64]

2000년경 보위부 사령부 아지트에서 간첩자로 몰려 고문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에 따르면, 영하 30도 이하의 추위에 팬티차림으로 쇠난로 안에 넣어 가두는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그 안에서는 몸이 얼고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65]

자. 비둘기 고문

자백을 받기 위한 극심한 신체적 고문으로 활용된다. 공중에 오랫

63) 신동혁(남), 1982년 11월 19일~2005년 1월 12일 수감, 신고접수일 2011-03-15,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p.37

64) 북한이탈주민 면접, 2011년 7월 4일.

65) 익명의 남성, 1999년 12월~2000년 2월 수감, 신고접수일 2011-05-24,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p.79.

동안 묶여 있는 것으로 “마치 가슴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것 같은 고통과 전신근육이 마비되는 끔찍한 고문”으로 묘사된다. 장시간 묶여있으면 가슴뼈가 새가슴처럼 튀어나오기 때문에 비둘기 고문으로 불린다.[66]

2004년 7월 회령시 인민보안서 구류장에서 조사를 받은 한 피해자는 두 손을 뒤로 하여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린 다음 라디에이터에 묶어두는 비둘기 고문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67]

차. 빛고문

북창정치범수용소 18호에서 수감경험을 한 김○○은 2층 건물의 지하에서 각종 고문을 당하면서 독방감금, 물고문 등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빛고문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를 6일 동안 난로위에 거꾸로 매달아 고문하고 2일 동안 살균 자외선에 노출시켰다. 이틀이 지나자 감각이 사라져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으며, 매달린 상태로 잠이 들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빛고문 후에는 가로 세로 45cm의 독방에 감금되었는데 상처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썩게 되었다고 한다.[68]

66)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의 공화국 북한』, pp.44, 46.

67) 김○○(남), 2004년 7월 8일~2004년 9월 21일 수감, 신고접수일 2011-05-27,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p.94

68) 북한이탈주민 면접, 2010년 9월 11일.

카. 물고문

북한에서는 머리를 물 속에 잠기게 하여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거나 코에 물을 들이 붓는 등의 물고문이 자행되고 있었다. 단기간에 피고문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고문 방식이다. 실제로 이로 인해 질식사 했다는 몇 가지 사례가 조사되었다.

평안북도 삭주 출신 북한이탈주민 김○○은 2008년 8월 탈북을 기도한 류○○ 일가족 3명을 신의주 보위부원들이 물고문하였으며 이들이 질식사하자 압록강에 시신을 버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69] 또한 호위사령부 출신의 이○○은 1995년 4월 함경남도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정신을 잃을 때까지 코에 물을 붓는 고문을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치아가 뽑히고 시각 및 청각이 일부 손상되었다고 증언하였다.[70]

2000년 강제 북송되어 눈을 가린 채 인가가 없는 수감시설에 실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한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물탱크 속으로 강제로 머리를 눌러 넣는 물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71]

---

69) 북한이탈주민 면접, 2009년 10월 20일.

70) 벨기에 일간지 La libre Belgique, 2016년 3월 12일.

71) 익명의 남성, 2000년 발생, 신고접수일 2011-03-15,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p.245

타. 거꾸로 매달기

거꾸로 매달기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신체고문이다. 철장에 거꾸로 매달리도록 강제하는 등의 고문으로 2009년 함경북도 길주에서 수감된 한 피해자는 한 달 간 2~3회 이 고문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허리디스크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증언하였다.[72]

2004년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또 다른 피해자는 다른 남성 재소자를 거꾸로 매다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는 '개 체조'라고도 불리는 고문기법인데, 개를 잡을 때 거꾸로 매다는 것과 흡사하다는 데서 붙여진 별칭이라고 한다. 15분 정도 매달려있으면 머리로 피가 쏠려 참기 괴로우며 흰자위가 새파랗게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73]

파. 손톱 밑 찌르기

1998년 사업 목적으로 방북하였던 선교사 정○○은 보위부에서 간첩죄로 체포되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간첩혐의에 대해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심문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무차별 구타와 물고문, 수면방해, 목조르기, 비명소리 듣게 하기 등 다양하고 잔혹한 고문을 받았다. 특히 입국 목적과 국적을 취조할 당시 대답을 하지 않자 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는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74]

---

72)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실태조사』, 2011년 탈북자(남) [ID 029(2012)], p.173.

73) 익명의 여성, 2004년 발생, 신고접수일 2011-08-23,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p.189

2. 심리적 고문 기법

가. 타인의 고문 및 처형 목격 강요

북한에서는 구류장이나 교화소 등에서 문제를 일으킨 수감자를 본보기로 총살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한 증언자는 전거리교화소 수감 당시 남자수감자 2명이 식량창고에서 속도전 가루 30kg을 절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총살이 선고된 것을 목격하였다. 이들은 교화소 내 선광장(캐낸 광석에서 가치가 낮거나 쓸모없는 것을 골라내는 일을 하는 장소)에서 총살되어 수감자들은 작업 후 한 줄로 서서 시체 옆을 지나가야 했다고 한다.[75]

특히, 도주 과정에서 붙잡히면 총살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어 위협하기 위해 처형 현장을 강제로 보게끔 한다.

> 교화소 내 사람들이 다 봤다. 1과에서 했다…. 죽기 직전에 거의 빈사 상태였다…그리고 총살을 해서 죽였다. 죽은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보게 한다. 그렇게 교화소 사람들이 빙 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사람 죽은 것을 반영하고 반영문을 써야 한다. 그 사람 죽은 것에 대한 느낌을 쓰라는 것이다…내 느낌을 쓰면 된다.[76]

> 달아나는 날에는 총을 싸서 죽여가지고 우리한테 데려와서 보여준다…총 쏴서 피투성이가 된 거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너희 달아나면 이렇게 된다'

74) 북한이탈주민 면접, 2015년 5월 2일.

75) 2000년 수감, NHKR2013-204 2013-11-12

76) 2010년 4월~2013년 1월 수감, NKHR2014-090 2014-07-15

하면서 보여주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못 달아난다.[77]

총살 전 집단구타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는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여성에 대해 공개처형을 실시하였다. 2006년 수감 중 이를 목격한 북한이탈주민은 총살 전 술에 취한 보위부원들이 이 여성을 집단 구타해 빈사 상태로 공개처형하였다고 증언하였다.[78]

2000년에 전거리교화소에서는 수감자가 도주하다가 잡히자 인민특별재판소를 개설하여 500명이 넘는 죄수들 앞에서 공개재판을 한 후 사형을 선고하였다. 공개처형 후에도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도주는 자멸이다'라는 팻말을 붙인 말뚝에 시체를 일주일간 매달아 수감자들이 보도록 만들었다는 증언이 있다.[79]

나. 폭언 및 인격모독

구금시설에서 관리자에 의한 폭언 및 인격모독 사례는 다수 증언되었다. 대부분의 사례는 강제노동 중 폭언 및 인격모독과 중국에서 북송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격모독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을 시도하였다가 2004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수감생활을 한 증언자는 평안남도 봉창탄광에서 채탄공으로 일하였다. 관리자들이 "니 애비애미에게 받은 게 그런 것이다. 탄광자

77) 2010년 1월~2012년 2월 수감, NKHR2013-019 2013-02-05

78) 2006년 3월 수감, NHKR2014-070 2014-06-17

79) 익명의 남성, 2000년 6월~2001년 1월 수감, 신고접수일 2011-05-14,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p.82.

식이니까 탄광일을 해야한다"라고 인격모독하였으며, "(너는) 죽어도 아깝지 않은 인간이다", "통나무 하나와 맞먹으니 죽어도 마땅하다. 통나무 한 대 값이라도 벌고 죽어라" 등의 폭언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80]

또한, 중국에서 북송된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이 다수 증언되었다. 도강 이후 강제송환 되었던 한 북한이탈주민은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능사로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 일단 보위부 집결소에 죄수라 하고 들어가면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조국을 배반했기 때문에 사람 자체 취급을 안 해 주니까….[81]

2008년 2월 혜산시 노동단련대 집결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증언자는 중국에서 북송된 여성들에게 강한 노동처벌을 하면서 "중국에서 몸판 것들"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다.[82] 또 다른 증언자는 2004년 청진집결소에서 임신 10개월의 동료수감자가 출산하였을 때 관리인(안전원)이 "이 갓나가 중국 가서 중국새끼들하고 그리 좋아서 애를 낳았다"고 폭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83] 신의주 보위부 집결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조사 되었는데 중국에서 출산 경험이 있는 수감자들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중국에서 가서 놀고 (몸) 팔고 왔다"고 비난하며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84]

---

80) 2004년 4월~2007년 9월 수감, NHKR2013-126 2013-07-09
81) 2007년 수감, NKHR2016-051 2016-04-19
82) 2008년 2월 수감, NHKR2013-141 2013-07-23
83) 2004년 4월 수감, NHKR2013-227 2013-12-24
84) 2009년 8월~2009년 9월 수감, NHKR2014-090 2014-07-15

다. 그 외 모욕적 처우

위의 사례 외에도 심리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비인도적인 행위가 발생한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평안남도 북창군의 제18호 북창 관리소에 수감되었던 피해자는 지도원이 수시로 머리를 들고 입을 벌릴 것을 지시하였으며 입 안에 가래침을 뱉고는 삼키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얼굴을 찌푸리거나 구역질을 하면 구타를 가했다고 진술하였다.[85]

3. 복합적 고문 기법

복합적 고문 기법은 신체적인 고문과 심리적인 고문이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문 기법은 인간의 기본 욕구 해소를 박탈 또는 방해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북한 구금시설 수감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괴로움은 물론 심리적인 압박감 및 불안감이 복합된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가. 독방감금

독방감금은 매우 널리 쓰이는 고문 방법이며, 그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이나 위해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많

85) 김혜숙(여), 1975년~2001년 수감, 신고접수일 2011-04-19,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p.51.

은 국가의 교정시설에서도 정상적인 징벌 절차의 하나로 사용된다. 그러나 독방에 갇혀 외부의 정보와 차단된 수감자들은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며, 때로 수감자들에게 우울증과 자살충동 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독방감금은 단순히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다. 독방의 환경은 일반 수용시설의 환경보다 매우 열악하며, 독방 수감자에 대한 대우 또한 견디기 힘들 정도이다.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독방을 경험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교화소의 독방은 "매우 좁아 몸을 온전히 펼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이며, 이 독방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일반 수감자에 비해 식사량도 절반만 제공하고 있다.[86]

독방감금은 경우에 따라 일반처분과 형벌처분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요덕수용소에 감금되어있던 피해자는 여성과 사귀고 그 여성이 임신되었다는 이유로 한 달간 독방처분이 내려졌는데 다리를 세워 앉아있던 것을 들켜 또 다른 독방으로 옮겨졌다. 그 방은 벼룩이 득실거렸는데 못 견딜 정도였으며 이것은 독방감금 중에서도 더 가혹한 처분이었다고 한다.[87] 2011년 2월 독방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증언자도 가로45cm와 높이 1m의 독방에 감금되었으며 이로 인해 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괴사되었다고 증언하였다.[88]

교화소뿐만 아니라 구류장에서도 독방감금을 당했다는 증언이 있다.

---

86) 2008년 7월 수감, NKHR2015-103 2015-05-10

87) 김○○(남), 1988년 3월~1992년 수감, 신고접수일 2011-3-15,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p.16.

88) 면접일 2010년 9월 11일.

남한 사람의 의뢰를 받고 북한에 있는 자녀를 찾아주다가 밀고로 붙잡힌 한 탈북자는 보안서 구류장에 20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낮에는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89] 조사과정에서 이 증언자는 "따귀, 발로 허벅다리 차기, 머리를 벽에 박기"등의 구타를 당했으며, "비판서 50장 작성" 및 일주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도 당했다. 그리고 남한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 증언자는 독방에 구금되었다고 증언했다.

독방은 고립과 압박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구타와 가혹행위의 장소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보위부 구류장에서 독방에 감금당하고, 그 독방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 증언자는 인신매매 미수 혐의로 혜산시 탑산동 보위부 구류장에 보름간 구금되어 조사받았다.[90]

> 나는 장작하고 발로 맞았다. 혜산집결소에 와서 보니까 피부가 새까맣게 죽어 있었다. 너무 맞았기 때문이다. 무릎꿇고 족쇄하고 숙이고 있다. 범죄자로 취급하고 처음에는 장작을 가지고 불라고 몸을 친다. 머리를 때리지는 않는다. 잘못 때리면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나는 넘기기 전에 잡혀서 일없었다. 중국으로 넘기면 죽어야 했다고 했다. 처음이고 젊었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빌었다. 거기서 썩도록 맞았다.

이렇게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이 증언자는 독방에 감금되었고, 그 독방에서 매일 한 시간 이상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한다.

> 아파도 참는다. 불라고 하는데 그걸 다 불면 다 죽어야 한다.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불면 내 죄값도 커져서 내가 아는 것만, 내가 현지에서 적발된 것만 부니까 계속 때린다. 뒤에 것을 계속 말해야 하는데 그

89) 2009년 1월 수감, NKHR2015-103 2015-05-19
90) 2013년 3월 수감, NKHR2015-159 2015-12-01

> 러면 죄가 더 커지고 사건도 커져서 단련대 갈 것도 교화를 가야 한다. 그래서 말을 안하고 그들은 정보를 알아야 공을 세우니까 때린다. 살자면 맞아도 참아야 한다.

독방이 고문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증언은 또 있다. 예심 전 7일 동안 독방생활을 경험한 한 증언자는 독방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자세를 취한 채 각목을 그 무릎 사이에 끼우고 고개를 숙이고 있도록"하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혹행위에도 증언자가 자백하지 않자, 보위부 부부장이 증언자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 벽에 찧었다고 한다.[91]

그밖에 처벌을 목적으로 독방감금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교화소에서 뜨개반 강제노동을 했던 한 증언자에 따르면, 노동분량을 도급제로 할당함에 따라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했고, 할당량을 세 번 이상 채우지 못할 경우 독방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았다.[92] 구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수감자에 대한 보복 행위로 독방처벌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한 증언자에 따르면, 구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독방에 1주일 동안 수감되는 처벌을 받았으며, 이들을 '낙후자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93]

나. 불결한 환경에 노출

북한의 구금시설은 기본적인 위생이 보장되지 않는다. 열악한 시설

91) 2011년 11월 수감, NKHR2013-207 2013-11-12
92) 2004년 7월~2007년 2월 수감, NHKR2014-111 2014-08-12
93) 2010년 수감, NKHR2014-031 2014-04-15

에서 한 방에 함께 앉아있을 공간이 부족할 정도의 많은 인원이 수감되어 있으며[94] 제대로 방역을 하지 않은 공간에서 전염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구금시설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악취가 심하고, 물이 부족하여 몸을 씻을 수 없으며,[95] 옷을 빨아 입을 수조차 없었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 처리를 하기 힘들어 옷에 묻는 그 상태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96]

보통 물탱크가 화장실 옆에 있는데, 물이 매우 부족하므로 물 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수감생 중 한 명을 뽑아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97] 물이 없어서 세수하는 것도 물관리인 또는 관리자에게 잘 보여야 할 수 있으며 비누는 가족들이 면회 올 때 얻을 수 있었다.[98] 이처럼 개인이 씻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이, 벼룩, 빈대 등이 창궐하였으며 이 때문에 괴로워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99]

방역은 거의 하지 않는데,[100] 온성 노동단련대에 수감 경험이 있는 한 증언자는 방역은 농약으로 살충과 방역을 함께 하였으며 효과가

94) 증산교화소의 경우 한 방 당 50명 정도 수감하였다고 한다. 2006년 수감, NKHR2014-070 2014-06-17; 온성군 구류장의 경우는 9평 남짓한 방에 20명을 수용하였다는 증언이 있다. 2005년 4월 수감, NKHR2014-072 2014-06-17; 2007년 전거리교화소에서는 1방에 200명씩 수용하여 복도, 세면장, 변소에서 취침하기도 하였으며 공간이 부족하여 몸을 겹쳐서 취침하였다는 증언이 있다. 2007년 12월 수감, NKHR2012-015 2012-02-07

95) 평안남도 증산의 단련대에 수감되었던 한 증언자는 한 달에 한 번 밖에 일하러 갈 때 개울에서 씻었던 것이 유일한 목욕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2005년 8월~2007년 3월 수감, NKHR2013-000129 2013-07-09

96) 2001년 12월 수감, NKHR2014-020 2014-03-18

97) 2010년 수감, NKHR2013-121 2013-06-25

98) 2006년~2009년 수감, NKHR2015-035 2015-02-10

99) 2003년 9월 수감, NKHR2012-136 2012-07-10

100) 2005년 수감, NKHR2013-110 2013-06-11

약한 중국 농약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벌레가 많아도 살충약은 공급되지 않았는데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101]

또한 심각한 문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 있어 전염병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금시설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였다는 증언이 다수 있다.[102] 2010년 11월 전거리교화소에서는 열병 발생으로 사망자가 속출, 같은 반 동료수감자 5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103] 한 번 전염병이 돌면 구금시설 내 수감자 수가 급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2005년 증산교화소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수감생이 다수 사망해 다른 교화소 수감원들을 이감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104]

전거리교화소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수감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매년 위생관리부족으로 2~3달가량은 전염병이 돌았다고 한다. 한 번 돌 때마다 30명 내지 50명이 사망하였다.[105] 함경남도 함흥시 보안서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생활을 한 증언자는 환경이 열악하여 한 사람당 이가 300마리가 넘게 있어 세다가 지칠 정도였으며 전염병으로 매일 사람이 죽어나갔다고 하였다.[106]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개천교화소에서는 파라티푸스로 인해 하루에 10명씩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107]

---

101) 2008년 9월 수감, NKHR2013-123 2013-06-25
102) 2012년 12월~2013년 2월 수감, NKHR2013-122 2013-6-25
103) 2009년~2011년 수감, NKHR2013-040 2013-03-05
104) 2005년 발생, NKHR2014-070 2014-06-17
105) 2003년~2012년 수감, NKHR2014-081 2014-07-01
106) 2004년 수감, NKHR2014-163 2014-10-07
107) 2011년 6월~2014년 3월 수감, NKHR2014-175 2014-10-21

수감방 내에 있는 재래식(푸세식) 화장실도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9년 전거리교화소 수감생활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35명 내지 40명이 같은 변기를 사용하였으며[108] 인분으로 인해 악취가 심하고 쥐들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한다.[109] 회령시 도보위부 구류장에서는 겨울철에 화장실 주변이 다 얼어서 볼일을 보기 위해 직접 변소의 얼음을 깨야 했으며 수감자들이 "똥독이 올라 괴로워했다"는 증언이 있다.[110]

다. 화장실 이용 제한

구금시설에서 화장실은 대개 수감방 내에 있으며 밖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화장실 이용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간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한다. 그마저도 정해진 시간에만 용변을 볼 수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 대기실에 수감되었던 증언자는 화장실을 하루에 세 번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나마 2번만 허락되었다고 하였다.[111] 2005년 양강도 삼지연군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증언자는 화장실은 아침 7시와 8시 사이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그 외에 요청하면 구타를 당해야만 볼일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112] 2008년 9월 함경북도 온성보위부 구류장에서 수감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대변보는 시간

108) 2009년~2011년 수감, NKHR2013-040 2013-03-05
109) 2009년 5월~2012년 1월 수감, NKHR2013-124 2013-06-25
110) 2010년~2011년 수감, NKHR2014-193 2014-11-18
111) 2008년 9월 수감, NKHR2013-123 2013-06-25
112) 2005년 12월 수감, NKHR2014-082 2014-07-01

이 정해져 있었으며 7-8명 당 30분의 시간을 주었다고 한다.[113]

2008년 3월 함경북도 온성군 구류장에서는 보위부원이 화장실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수감자 전원이 오랜 시간 참다못해 바지에 배설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114] 2010년 5월 새별 보위부 구류장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화장실을 휴식시간 외 이용할 수 없어 방광염에 걸린 수감생들이 다수였다고 한다.[115]

라. 수면박탈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미국의 정보기관 등에서도 테러용의자들을 심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문방식이다. 구타 등에 비해 영구적인 신체적 손상이나 사망의 위험은 적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통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북한에서도 역시 취조 및 심문 등의 과정에서 피심문자들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널리 쓰이고 있는 고문 방식이다.

양강도 대홍단군 단련대를 경험했던 한 여성 증언자에 따르면, 단련대에서 "잠 안 재우고 밤새 뛰게"하는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 같은 처지의 수감자들이 이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뇌물을 바쳐야 했으며, 이 증언자도 나중에야 대부분의 뇌물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결국 본인도 "콩 25kg, 1달에 중국 돈 10만원(인민폐 80~90원)"을 뇌물로 지불하고 좀 일이 수월한 식당으로 옮길 수 있

113) 2008년 9월 수감, NKHR2013-000181 2013-10-01
114) 북한이탈주민 면접, 2009년 3월 12일.
115) 2010년 5월 수감, NKHR2013-000132 2013-07-09

었다고 한다.[116]

2007년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증언자에 따르면 계호원 리ㅇㅇ가 새벽에 잠자고 있는 구금자들을 깨워서 고정자세를 강요하였으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구타했다고 한다.[117]

마. 영양박탈

1) 소량의 식사배급

교화소나 구류장 등의 수용시설에서 급식은 질과 양 모두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도 힘든 수준이다. 중국과의 밀수 행위 때문에 체포되어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감금되었던 한 증언자는 북한 내 구금시설의 일반적인 식사 배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118]

> 하루에 통강냉이 이만한 것을 옛날 북한 군대들이 먹는 식기에 108알정도 되었다. 나보고 그것을 세라고 했다. 내가 일주일간 누워 있느라 밥을 한 숟가락도 못 먹었다. 일주일 된날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일어나서 먹었다. 보위부에서 죽으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도 따라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죽으면 안 된다. 죽어도 나가서 죽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돌아앉아서 밥 먹을 때 나보고 강냉이 알을 세라고 했다.

교화소에서 한 사람당 450g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대로 공급

116) 2013년 10월 수감, NKHR2014-141 2014-09-02
117) 2007년 2월 수감, NKHR2014-040 2014-04-29
118) 2013년 7월 2일~7월 15일 수감, NKHR2015-136 2015-09-22

이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중간에서 관리자들이 착복하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물에 불려서 죽을 만들어 무게를 맞추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119]

기본적인 급식수준이 이 정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수용자들은 종종 이마저도 박탈당하는 벌을 받는다. 개천시에서 강제노동을 경험한 한 탈북자는 하루에 16시간씩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받았다. 이들은 하루에 애기모자 3~4개씩을 생산해야 했는데, 이 할당량을 못 채우면 식사량을 줄이는 급식처벌을 받았다.[120]

이렇게 교화소 내의 급식 사정이 열악하다보니, 영양실조('허약')로 사망하는 일도 흔하다. 개천교화소에 수용되었던 한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소채작업을 담당한 농산 2반에는 43명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중 37명이 허약과 열병으로 사망하고 6명만이 살아남는 일도 있었다. 이 일이 일어난 2011년에는 농사가 잘 안되어서 수감자가 캐어 먹을 수 있는 배추뿌리 조차도 부족해졌고, 그 결과 많은 수감자들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증언자 본인 또한 신경성 허약(화병)과 부종으로 수감된 지 1년 반 만에 허약반으로 이감되었다고 한다.[121]

이처럼 제공하는 급식의 양이 부족하다 보니 식량을 외부에서 충당하는 것을 허용한다. 생존을 위해서는 면회를 통해 가족들로부터 음식을 받아야 했는데, 면회는 규정상 석 달에 한 번으로 되어 있어 이마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122] 그러나 담당자에게 담배 등의 뇌

119) 2009년~2012년 수감, NKHR2014-132 2014-08-26

120) 2010년 8월 수감, NKHR2015-012 2014-03-04

121) 2009년 수감, NKHR2015-186 2015-12-15

122) 면회를 올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많은 수감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기 때문도 한 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경우 배우자에게

물을 건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회가 가능했고,[123] 이때 가족에게 "펑펑이 가루"[124]를 얻어서 부족한 급식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나마 중간에 착취 당해 정작 수감자에게 돌아오는 양은 훨씬 적었다. 교화소에서 규정위반 등을 저지른 수감자들은 "낙후자반"으로 분류되어 인분 처리 등의 강도 높은 노동처벌을 받는다. 이에 더해 이들은 식사량도 일반 수감자의 3분의 1로 줄이는 급식처벌까지 함께 받아야 한다.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에서는 배고픔을 못 이긴 교화소 수감자들이 풀을 뜯어 먹는 일이 있었는데, 이마저 들키면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125] 이 증언자는 굶주린 60대 여성이 밭에 떨어진 음식물을 주워 먹었다고 심하게 구타당해서 허리를 못 쓰게 된 사건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대개 노동 나갔을 때 풀을 뜯어 먹는 것으로 연명하며,[126] 산쥐를 잡아먹었다는 증언도 있었다.[127] 전거리교화소에서도 역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쥐나 뱀, 개구리 등을 잡아먹었다고 한다.[128] 교화소 생활이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는 소의 배설물에 섞여 나온 낱알을 씻어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129]

이혼 의향을 물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수감대상자만 수감되지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배우자까지 수감된다는 증언이 있다. NKHR2013-000154 2013-08-20

123) 2009년 전거리교화소의 경우 규정상 뇌물로 담배 1갑을 내면 3개월에 1회 면회가 가능하지만 담배 3~5갑 정도를 내면 2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한다. 2009년 수감, NKHR2013-037 2013-02-19

124) 옥수수로 만든 일종의 튀김가루 같은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것으로 만든 떡을 '펑펑이 떡' 혹은 '속도전 떡'이라고 부른다.

125) 2012년 수감, NKHR2015-123 2015-09-22

126) 2005년 5월 수감, NKHR2014-072 2013-06-17

127) 2008년 7월~2009년 8월 수감, NKHR2015-103 2015-05-19

128) 2009년~2011년 수감, NKHR2013-019 2013-02-04

129) 2011년 수감, NKHR2012-099 2012-05-29

2000년 요덕 정치범수용소 수감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옥수수 농사철에는 수감자들이 종자를 훔쳐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자를 인분에 버무려 파종을 하였는데 이것을 파먹은 수감자들이 대장염으로 죽는 일도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130]

2) 오염된 음식 제공

급식의 양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나마 지급되는 급식의 질은 더욱 끔찍한 수준이다.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한 증언자는, 구류장에서 나온 급식이 "통강냉이, 쥐똥, 통겨 섞은 가루 식사"였으며, 여기에 "건더기 없는 소금물"을 국으로 주었다고 전한다.[131]

오염된 음식으로 인해 수감자들이 사망했다는 증언도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교화소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2008년에 신의주 동림교화소에서 수감되었다가 본인을 포함한 여성들 150명 가량이 2010년 강원도 천내교화소로 이감되었다. 동림교화소와 달리 천내교화소에서 썩은 강냉이와 돌이 섞인 밥을 주어 이감된 수감원 150명 중 절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32]

2010년 3월경 개천교화소에서는 식량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옥수수 알갱이 10알만이 한 끼 식사로 제공되었으며 다른 곳에서 양식(강냉이)를 얻어왔는데 휘발유 냄새가 났다고 한다. 교화

130) 정○○(남), 2000년 4월 6일~2003년 4월 12일 수감, 신고접수일 2011-3-15,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p.28.

131) 1999년~2001년 수감, NKHR2010-039 2010-11-16

132) 2008년~2011년 수감, NKHR2014-129 2014-08-26

소의 식량 사정은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나아지지 않았으며 당시 일시적으로 교화소 내 사망자가 증가하였다.[133]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식수마저 매우 부족한 양만 배급되거나 오염된 물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이 있다.[134]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 감금되었던 한 증언자[135]는 물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녹이 섞여 있어 이를 마시고 탈 난 수감자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또 다른 증언자는 양동이 하나씩 식수가 제공되었지만 더러워서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식사 때 나오는 국으로 수분 보충을 했다고 하였다.[136] 2001년 중산교화소에서도 오염된 식수 때문에 수감자들이 무더기로 사망하였다는 증언이 있다.[137]

바. 열악한 의료 환경

전 국민에게 무료로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주의의 이상과 달리, 북한의 의료 체계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질병이 있어도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는 매우 힘들다. 탈북자들은 공통적으로 병원에서의 의료서비스는 아예 기대하지도 않으며, 몸이 아플 경우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해 먹는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각종 구금시설 내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더욱 힘들며, 때로는 치료를 못 받

133) 2010년 수감, NKHR2015-005 2015-01-13
134) 1998년 수감, NKHR2011-008 2010-08-10; 2004년 11월 수감, NKHR2012-044 2012-03-19
135) 2002년 5월 수감, NKHR2011-064 2011-03-08
136) 2008년 9월 수감, NKHR2013-123 2013-06-25
137) 2001년 수감, NKHR2012-068 2012-04-24

아 사망에 까지 이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노동단련대나 교화소 같은 구금시설에서는 과도한 노동 및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부상과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다,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은 부족한 급식 때문에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것이 일반적이라 각종 질병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함북 회령시에 위치한 전거리교화소를 경험한 한 증언에 따르면, 아픈 사람이 있어도 교화소에서 치료나 약 처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138] 질병 등으로 약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가족 등의 면회 때 반입되는 약으로 치료하는 수밖에 없다. 약 뿐만이 아니라 교화소 내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용품은 면회를 통해 반입하는 수밖에 없으며, 최소한의 식사 배급 외에 교화소에서 제공해주는 것은 없다고 한다.

약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있다. 밀수를 하던 남편이 체포되어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었던 한 증언자는, 자신의 남편이 교화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는데도 치료를 해주지 않아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139]

> 내가 사고 다음날 병원에 들어가 봐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골이 다 터진 상태로 붕대도 없이 그냥 방치했다고 했다. 피가 계속 흐르는데 피가 흘러야 한다고 피가 더 흘러야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냥 터진 채로 있다는 거다. 의식도 있었다고 했다.빨리 수술 좀 해주지 왜 안하냐고 물었더니 선생들이 없다는 것이다. 언제 오냐고 했더니 평양 갔던 선생들도 오는 게

138) 2009년 수감, NKHR2015-122 2015-09-08
139) 2012년 발생, NKHR2015-151 2015-11-17

> 늦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8일 날 저녁에 죽었다고 한다. 혈압이 올라가서 그 상태에서 3일만 견디면 살아난다고 했다. 내가 군 병원에 찾아가서 물어보았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뛰면 일없다고 했다. 근데 3일을 견디었다. 나는 그것이 죽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 죽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목숨은, 숨이 붙어있는 것은 죄인이라도 살려주어야 되지 않겠나?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집결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혜산시 보위부 집결소에 5개월 동안 수감되었던 한 증언자에 따르면, 시 보위부 집결소에는 상주 의사나 의료 시설이 없었지만 도보위부 집결소에서는 있었다고 한다.[140] 그러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는 없었으며, 아플 경우에는 외부에서 의사를 섭외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 성적 굴욕감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성적인 굴욕감을 받는 대상이 된다. 여성은 중국에서 체포된 이후 몸수색 과정에서 알몸의 상태로 자궁 및 항문 검사를 받으며 구금된 상태에서 빈번한 성희롱과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중국에서 북송되어 온 임산부에 대해 강제로 낙태를 진행한다. 여성의 뱃속 태아를 '중국 종자' 등으로 표현하며 낙태를 강제한다.

140) 2014년 수감, NKHR2015-170 2015-12-01

1) 알몸 상태에서의 자궁검사

알몸 상태에서의 자궁 및 항문 검사는 강제송환 된 거의 모든 여성이 중국 체포 이후 구금 시설을 옮길 때마다 수차례 경험하게 된다.[141] 몸속에 숨겨온 돈을 찾기 위해 알몸 상태로 뽐뿌를 강제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며 자궁 및 항문에 손을 넣어 직접 확인하기도 한다.

2006년에 중국에서 체포된 증언자는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북송되어 온 여성들은 모두 알몸 상태로 최대 10명을 일렬로 세웠다. 일렬로 서서 대기하다가 본인 차례가 오면 보위부원 앞에 가서 몸을 'ㄱ'자로 숙여 보위부원이 신체내부를 육안으로 검사하였으며 손을 넣어 자궁 내부도 검사하였다. 이후 알몸 상태로 뽐뿌를 수차례 하였다. 이 때 뒤에서 대기하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142] 남성 보안원이 옷을 벗도록 강요하며 옷을 벗지 않으면 윽박지르며 강제로 벗겼다는 증언도 있다.[143]

자궁 검사는 여성에 의해 집행되었다는 증언이 다수 있으나, 한 명의 조사원이 위생에 대한 주의도 없이 한꺼번에 여러 명을 검사한다.[144] 2008년 5월경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서는 여자 군의가 비닐장갑을 끼고 자궁에 손을 넣었고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씻으면서 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145] 그 밖에도 맨손으로 자궁검사를 받았다는

141) 2013년 3월~2013년 4월 수감, NHKR2013-218 2013-11-26
142) 2006년 수감, NHKR2014-070 2014-06-17
143) 2004년 5월 수감, NHKR2013-192 2013-10-17
144) 2004년 5월 수감, NHKR2013-192 2013-10-17
145) 2008년 5월~2008년 6월 수감, 2014-03-18, NHKR2014-015

증언이 있었으며,[146]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자궁 및 항문검사를 받았다는 사례도 조사되었다.[147] 더 심한 경우 시멘트 바닥에 눕도록 지시한 후 쇠꼬챙이로 자궁을 벌려 살펴보았다는 증언도 있다.[148]

남성으로부터 알몸 상태로 자궁검사를 받은 사례도 조사되었다. 한 여성은 2013년 3월 15일 경 중국 도문과 함북 온성군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여성에게 검사를 받았지만 동해 4월 함북 길주군 보안서 구류장으로 보내졌을 때는 남자 계호책임자로부터 나체로 자궁검사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149]

2) 성폭행

구금시설 내에서 관리자에 의한 성폭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3월 신의주 집결소에서 수감경험이 있는 한 증언자는 일부 여자 수감원들이 밤마다 보안원에게 불려나갔다고 하였다.[150] 2009년에 전거리교화소에서는 관리인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놀았던 대로 그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있다.[151]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으며,

146) 2011년 3월 수감, NHKR2013-038 2013-02-19

147) 2003년 9월~2004년 8월 수감, NHKR2013-227 2013-12-24

148) 김○○(여), 1975년~2001년 수감, 신고접수일 2011-04-19,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p.53.

149) 2013년 3월~2013년 4월 수감, NHKR2013-218 2013-11-26

150) 2004년 5월 수감, NHKR2013-192 2013-10-17

151) 2009년 구금, NHKR2012-010 2012-01-31

동시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쉬운 노동을 시켜준다는 조건을 내걸며 요구하기도 한다.[152] 때문에 이것을 성접대라고 표현한 사례도 있다.[153] 주로 수감원 중 식당에서 일하는 식모나 다른 수감원들을 관리하는 반장을 맡게 된다.[154] 한 증언자는 지인이 밀수로 현장 적발되어 혜산시 집결소에 2개월간 구금되었을 당시 관리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요구에 응하면 식모로 배정되어 심한 노동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155] 또 다른 증언자는 2010년 9월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었을 때 뜨개반 2반과 3반 반장이 담당 보안원에게 자리유지를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156] 반대로 불응할 경우, 노동을 심하게 시키거나 반장에게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여성을 괴롭히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단련대 수감 당시 이러한 강압적 환경 때문에 모든 여성 수감원들이 성폭행 당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하였다.[157]

성폭행을 당해도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가해자가 간부 또는 간부의 자식이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158] 보안원의 성폭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159]

---

152) 2008년 5월 수감, NHKR2013-097 2013-05-14
153) 1999년 11월~2001년 수감, NHKR2013-221 2013-12-10
154) 2013년 4월 수감, NHKR2013-218 2013-11-26
155) 2011년 수감, NHKR2015-024 2015-01-27
156) 2010년 9월 수감, NHKR2013-191 2013-10-17
157) 2007년 9월~2013년 수감, NHKR2015-059 2015-03-24
158) 2004년~2007년 수감, NHKR2013-126 2013-07-09
159) 2007년 2월~2007년 4월 수감, NHKR2015-032 2015-02-10

2010년 만포집결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던 한 여성은 보안원에게 다른 방으로 불려가 성폭행 당하였으며 함께 수감된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하였다.[160]

미성년자들도 이러한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꽃제비 생활을 하던 증언자는 평성 상무에 1달간 구금되었을 때 간부 책임자로부터 성폭행 당하였다. 당시 증언자는 16세의 미성년자로 성경험이 없었으나 가해자는 성병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하의 탈의를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성폭행하였다. 이 여성은 당시 첫 경험이라는 수치심과 임신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으며 그 이후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고 한다.[161]

3) 강제 낙태

중국에서 잡혀 강제송환 된 여성의 경우 중국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우 도강할 때 인신매매 사기를 당하거나, 중국에서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강제송환 된 후 조사 과정에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162] 주로 구류장이나 집결소에서 낙태가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에서는 임신 여성에게 "중국 종자"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며 낙태를 강제한다.[163] 고난의 행군 당시

160) 2010년 수감, NHKR2014-031 2014-04-15
161) 2007년 수감, NHKR2014-186 2014-11-04
162) 2007년 11월 수감, NHKR2014-086 2014-07-01

에는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여 임신한 상태로 북송된 사람이 많았는데 그 당시 40명 이상의 여성이 낙태당한 것을 기억한다는 증언이 있다.[164] 낙태의 방법은 다양하다.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거나 주사로 약물을 주입한다.[165] 2011년 양강도 집결소에서 중국인 아이를 임신한 여성 3명을 양강도 산원으로 끌고 가 낙태시킨 사례가 있다. 양강도 산원 3층에 이러한 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한다.[166]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서 구금되었던 한 증언자는 동료수감자였던 임신 2개월의 김ㅇㅇ가 보위부원의 지시에 의해 여의사가 약을 주어 낙태시키는 것을 목격하였다.[167] 신의주 집결소에서는 낙태용 쇠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168]

그러나 의료행위 없이 단순히 구타나 뽐뿌 등의 가혹행위로 인위적으로 유산을 시키기도 한다. 한 증언자는 1999년 12월 함남 고원군 안전부 구류장에 구금되었을 당시 동료수감자가 중국인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예심원에게 구타당하여 아이가 유산되는 것을 목격하였다.[169]

임산부가 낙태 후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것을 목격 또는 듣문한 것이 다수 증언되었는데 구타로 인한 유산 후 일주일 내 사망,[170] 의사

163) 2009년 6월~2010년 4월 수감, NHKR2013-098 2013-05-14; 2004년 수감 중 목격, NHKR2014-135 2014-09-02

164) 2000년 수감 중 듣문, NHKR2013-139 2013-07-23

165) 1995년 5월 수감 중 경험, NHKR2013-128 2013-07-09; 2007년 4월 수감 중 목격, NHKR2012-008 2012-01-10

166) 2011년 수감 중 목격, NHKR2012-275 2012-12-11

167) 2009년 1월~2009년 9월 수감, NHKR2013-022 2013-02-05

168) 2009년 수감 중 듣문, NKHR2012-077 2012-05-08

169) 1999년 12월 수감, NHKR2013-221 2013-12-10

170) 2011년 수감 중 목격, NHKR2012-067 2012-04-24

인 동료수감자에 의한 중절 수술 이후 과다출혈로 사망[171] 등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다.

강제 낙태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산모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신의주 집결소에서 수감된 한 여성은 임신 8개월에 강제낙태 당하였다.[172]

탈북 이외의 일반 범죄로 인해 구금되는 경우에도 낙태를 강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북한에서 남편을 둔 임산부에 대해서는 해산 전에 형을 중지하고 일찍 출소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죄가 중할 경우 강제낙태를 집행한다.[173] 밀수 혐의로 2005년 삼지연군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된 33세 여성 장○○은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 당했다.[174] 또한, 북한에서 소 절도는 엄중한 처벌대상이 되는데 온성군 구류장에서 소 절도로 구류장에 수감된 9개월 임산부에게 강제낙태를 시도하는 약을 먹였으나 임산부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175]

4) 개방된 화장실 사용

구금시설에서는 관리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는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상한 행동(숨긴 돈을 빼내는 행위 등)을 했다고 생각되면 이를 알아내려 구타했다.[176] 한 증언자는 양강도 삼지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한 칸 당 8

171) 2008년 3월 수감 중 목격, NHKR2012-079 2012-05-08
172) 2003년 수감 중 득문, NHKR2015-035 2015-02-10
173) 2010년 9월 수감, NHKR2013-191 2013-10-17
174) 2012년 5월 수감 중 득문, NHKR2013-191 2013-10-17
175) 2006년 수감 중 목격, NHKR2012-009 2012-01-31

명을 수용하였는데 20cm의 칸막이로 가려진 화장실로 볼일을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다고 증언하였다.[177]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또 다른 증언자는 화장실이란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칸막이 없는 변기를 이용해야 했다고 하였다. 이 여성은 물이 나오지 않아 한 쪽에 물을 받아놓고 용변 후 뒤처리를 해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인간 이하의 수치심을 느꼈다고 증언하였다.[178]

176)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의 공화국 북한』 (서울: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2007), pp.70, 79.
177) 2000년 12월 수감, NHKR2014-082 2014-07-01
178) 2005년 4월 수감, 2014-072 2014-06-17

Ⅳ 결 론

이상에서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실태를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는 어느 한 시기 혹은 어느 한 장소에 국한해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북한사회 전체에 고루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는 북한 당국이 범죄로 취급하는 비법월경자부터 다양한 일반 범죄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북한 내에 이러한 현상이 만연한 이유는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는 수감시설 내의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발생한다. 또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자체가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의 일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에서 면담한 여러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대하여 상세히 증언해 주었고, 이러한 점을 통해 이러한 피해상황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 내 일반주민들이 경험하는 일반적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관련된 북한 당국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국제사회는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현해 왔고, 2014년 2월 유엔 북

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이러한 우려가 구체화 된 바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국제법상 불법인 고문(torture) 및 기타 비인도적 심문 수단(inhuman means of interrogation)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와 처벌에 관한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수감자들이 인도적 조건(humane conditions) 하에 있을 수 있도록 일반적 수감체계를 개혁하여야 한다…"[179]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에 대해 무한정 반대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를 위시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침해실태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북한 당국에 대한 압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 언급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된 개선방안은 북한 내 제도적 차원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북한 내에 이미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문, 구타, 가혹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비인도적 처우 및 취급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180] 한국 정부와 국

179)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자료집,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25.

180)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58~65.

제사회는 우선 자국의 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현상의 개선을 위해 북한 내 이미 존재하는 법·제도적 메커니즘을 염두에 둔 북한 당국과의 대화 및 기술협력 방식을 추진할 수도 있다.

둘째,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개선방안은 북한 내 법제도적 측면 뿐 아니라 범죄자와 일반 주민을 막론하고 인도적 환경 및 조건의 형성과 연관되어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이에 대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수감자들이 인도적 조건 하에 있을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고문, 구타, 가혹행위 등의 현상에 대해서는 직접 중지를 요청하되 동시에 북한 내 만연한 비인도적 문화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우에 대해서는 인도적 환경 및 조건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인식과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북한 인권 침해실태, 그 중에서도 특히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2015년 6월 서울에 개소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의 접촉면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실태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개선의 전반에 대한 보다 실제적 논의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전반의 객관적 실태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관련 사안에서 북한 당국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